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탈퇴 규정

#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탈퇴규정

제정 2021년 12월 6일

개정 2026년 4월 29일

**제1 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6조(조직)제1항 및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에 따른 종목단체의 체육회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체육회 정관 제8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체육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종목단체가 규약에서 정한 회원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3. “올림픽대회 종목 및 아시아 경기대회 종목”은 제8조 등급 및 가입심의 당시의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

**제3 조(가입신청서류)**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4. 단체장의 신원진술서(별지 제2호 서식)
5. 단체의 규약 및 제 규정
6.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7.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8. 회원종목클럽단체(이하“클럽”이라 한다) 설치 현황
9. 동종목단체 설치 현황
10.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1.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2.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
13. 해당 단체의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에 관한 참고자료
14. 부산시종목단체 가입증명서

**제 4 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영도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영도구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종목협회 회원단체(클럽) 3개 클럽이상, 1개 클럽에 영도구민 50%이상, 1개 클럽회원 수가 종목단체 대회 경기 인원 정수의 2배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6.04.29.>
  5.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 다만, 경기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7.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8.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올림픽종목은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동종목단체(클럽)가 2개 이상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동계 올림픽 종목에 대하여는 구·군종목단체 조직 수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영도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영도구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종목협회 회원단체(클럽) 3개 클럽이상, 1개 클럽에 영도구민 50%이상, 1개 클럽회원 수가 종목단체 대회 경기 인원 정수의 2배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6.04.29.>
  5.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올림픽, 아시안게임 정신종목은 제1항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영도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영도구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종목협회 회원단체(클럽) 3개 클럽이상, 1개 클럽에 영도구민 50%이상, 1개 클럽회원 수가 종목단체 대회 경기 인원 정수의 2배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6.04.29.>
  5.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6.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 7 조(심의절차)**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체육회 정관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에 따른다.

②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종목과 아시안게임 종목은 준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부터 만 3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단체 승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경과기간과 심의 요청 또한 같다.

**제 8 조(등급심의)** ① 체육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을 매년 심의한다.

② 등급심의에서 정회원, 준회원단체가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또는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된다.

③ 체육회는 등급 및 가입심의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의 회의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 종목단체가 체육회 정관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정관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시킨다.

③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에 대하여는 체육회 정관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2항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2. 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체육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종목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종목단체인 경우
- ④ 종목단체가 해산한 경우 체육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탈퇴신청)** 회원단체가 체육회 정관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제2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제11조(동체육회 규정의 적용)** 동체육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동종목단체(클럽)에 한하여 가입·탈퇴 규정의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2021. 1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단체가입요건)**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단체 중 가입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어르신 종목은 예외로 한다.

## 부 칙(2026. 0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단체가입요건)**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단체 중 가입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어르신 종목은 예외로 한다.



#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연 락 처	자택전화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경 력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별 관 계(일자)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계급	군 번	미 필 사 유	
		. . ~ . .						
배우 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 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li> <li>■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li> </ul>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조회자료(경찰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li> </ul>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